



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

[시행 2023. 2. 21.] [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28호, 2023. 2. 21., 일부개정.]

서울대학교 연구지원과, 880-51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를 위하여 「서울대학교 학칙」 제23조제3항 및 「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」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11. 21., 2021. 7. 2.>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신설 2021. 7. 2.>

1. “실험동물”이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동물 중에서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. <신설 2021. 7. 2.>
2. “동물실험”이란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. <신설 2021. 7. 2.>
3. “동물실험시설”이란 「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실험동물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시설을 의미하며 「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」 별표 1과 같다. <신설 2021. 7. 2.>
4. “동물실험실시자”란 동물을 대상 또는 재료로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<신설 2021. 7. 2.>
5. “중대한 감염사고”란 실험동물이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전염력이 강하고 동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에 감염된 사고를 말한다. <신설 2021. 7. 2.>

제3조(직무)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(이하 “실동원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1. 11. 21., 2021. 7. 2.>

1. 실동원 동물실험시설 운영 <신설 2021. 7. 2.>
2. 동물실험시설 운영 및 수의학적 관리에 대한 지원 <개정 2021. 7. 2.>
3. 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<신설 2021. 7. 2.>
4.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위한 실사 <신설 2021. 7. 2.>
5. 「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」 제12조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의 실험동물관리위원회 보고 <신설 2021. 7. 2.>
6. 실험동물의 구입, 반·출입 및 사육관리 <개정 2021. 7. 2.>
7.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<개정 2021. 7. 2.>
8. 감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처리 <개정 2021. 7. 2.>
9. 동물실험 교육 <개정 2021. 7. 2.>
10. 동물실험시설과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시설의 폐쇄에 대한 건의 <신설 2021. 7. 2.>
11. 동물실험시설 내부규정 등 관리 <신설 2021. 7. 2.>
12. 동물자원 동결 및 청정화, 형질전환동물 제작 등을 포함한 실험동물 연구지원 <개정 2021. 7. 2.>

제4조(원장) ① 실동원의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1. 7. 2.>

- ② 원장은 실동원을 대표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 <신설 2021. 7. 2.>
- ③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조직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21. 7. 2.>

제5조(조직 등) ① 실동원에 실험동물사육부, 실험동물연구지원부, 동물실험시설관리부 및 행정실을 둔다. <개정 2006. 8. 3., 2011. 11. 21., 2021. 7. 2., 2023. 2. 21.>

- ② 각 부에 장을 두며, 각 부의 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06. 8. 3., 2011. 11. 21., 2021. 7. 2., 2023. 2. 21.>
- ③ 각 부 및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 <개정 2011. 11. 21., 2021. 7. 2., 2023. 2. 21.>

1. 실험동물사육부: 실험동물 사육 환경 점검, 실험동물의 유전적·미생물학적 품질관리, 실험동물의 구입, 반·출입 및 사육관리와 동물실험시설에 필요한 수의학적 관리 지원,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
2. 실험동물연구지원부: 동물실험 기술지원, 동물실험 장비 구입 및 관리, 동물자원 동결 및 청정화, 형질전환동물 제작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3. 동물실험시설관리부: 동물실험시설 지원, 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, 동물실험 교육, 감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처리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4. 행정실: 서무, 회계 및 그 밖의 행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, 2023. 2. 21.>

제6조(연구원 등) ① 실동원에 겸무연구원,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객원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.>

- ② 겸무연구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속 대학(원)장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 7. 2.>
- ③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의 임용·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」에 따르며, 인건비 등은 실동원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21. 7. 2.>

제7조(동물실험시설운영위원회) ① 동물실험시설의 지원과 효율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1. 11. 21., 2021. 7. 2.>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10. 8. 25., 2011. 11. 21., 2021. 7. 2.>

1.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 <신설 2021. 7. 2.>
2. 연구부처장과 기획부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신설 2021. 7. 2.>
3. 그 밖의 위원은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? 별표 1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장(이하 “동물실험시설의 장”이라 한다) 또는 교내 인사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21. 7. 2.>
4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<신설 2021. 7. 2.>

-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1. 11. 21., 2021. 7. 2.>
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11. 11. 21.>

1. 동물실험시설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사항
2. 실험동물의 구입, 반·출입 및 사육관리와 동물실험시설에 필요한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3.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4. 실험동물의 중대한 감염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5. 실동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6. 실동원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 7. 2.>
7. <삭제 2023. 2. 21.>

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- ⑥ 실동원의 자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며,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 <개정 2011. 11. 21., 2021. 7. 2.>

1. 소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 <신설 2021. 7. 2.>
2. 각 부의 장, 행정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 <신설 2021. 7. 2.> <개정 2023. 2. 21.>
3. 그 밖의 위원은 교내 인사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<신설 2021. 7. 2.>
-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<신설 2023. 2. 21.>

제8조(동물실험시설 운영에 대한 지원)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수의학적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7. 02.>

- ②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원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07. 02.>
[본조신설 2011. 11. 21.]

제9조(동물실험시설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)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-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07. 02.>
-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<신설

2021. 07. 02.>

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를 확인 및 평가한 결과에 이 규정이나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 관리 규정? 및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?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고, 그 사실을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제10조(동물실험시설 승인을 위한 실사) 원장은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? 제4조제4항제6호에 따라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요청한 시설을 실사하고 그 결과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제11조(승인 후 점검 결과의 보고) 원장은 ?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?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달받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대하여 조치하고, 이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제12조(실험동물의 구입 및 반·출입) ① 동물실험실시자가 실험동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동에 구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원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실험동물을 구입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② 동물실험실시자가 실험동물을 동물실험시설 또는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?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별도의 시설에 반·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에 반·출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해당 시설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실험동물의 반·출입을 승인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[본조신설 2011. 11. 21.]

제13조(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) ① 원장은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?에 따라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을 수집하고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?에 따라 스스로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을 분별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7. 02.>

[본조신설 2011. 11. 21.]

제14조(감염사고의 예방 및 사고처리) ①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?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험동물에 대한 미생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질병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 감염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②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중대한 감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중대한 감염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염사고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④ 원장은 감염사고의 경위 및 사후처리 결과를 환경안전원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 및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[본조신설 2011. 11. 21.]

제15조(동물실험 교육) ① 원장은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?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물실험 교육을 주관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② 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는 동물실험실시자,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는 교직원으로 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③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제2항의 동물실험 교육 대상자가 동물실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07. 02.>

[본조신설 2011. 11. 21.]

제16조(동물실험시설 등 폐쇄 건의)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이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? 제8조에 따른 실험동물관리위원회의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폐쇄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07. 02.>

② 원장은 동물실험시설 승인을 받지 않은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 시설이 운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실험동물관리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제17조(동물실험시설 내부규정 등 관리) ① 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정하는 실험동물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 등을 검토하고, 내부규정 등이 이 규정이나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 규정? 및 ?서울대학교 실험동물관리지침?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동물실험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21. 07. 02.>

07. 02.>

제18조(부담금) ① 원장은 동물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등을 동물실험실시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, 실험동물 관련 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부과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 07. 02.>

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, 부담금 사용 등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[본조신설 2011. 11. 21.]

제19조(자문위원) 실험동물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교외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제20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실험동물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21. 07. 02.>

[본조신설 2011. 11. 21.]

부칙 <제02428호, 2023. 2. 21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